2026년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
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사업 모집공고(4차)

울산 지역 석유화학업 업황 둔화에 따른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11월 1일
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

Ⅰ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2026년 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 <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사업>

□ 사업목적 :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기반 마련

Ⅱ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-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석유화학업(전후방 포함) 연관 화물·운송업 종사자 대상 사회임금 50만원 지원(울산페이 지급)
- 부양가족 보유 시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(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인정)

구분	기본 (본인 기준)	(추가지원) 부양가족 인원 수	
		1인	2인 이상
지원금액	500,000원	150,000원	300,000원

□ 지원대상 :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(전후방 포함) 연관 화물·운송업 종사자

구분	업종코드 (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기준)
석유화학업종 (전후방 포함)	- C19(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) - C20(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) - C22(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) - C23(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)

- 참여자 요건

필수요건	울산광역시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(2026.1.12.) 이후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(전후방 포함)과 거래관계 증빙이 가능한 자
선택요건	*** 선택 항목 中 1가지 충족 필요** ① 울산광역시 소재 화물·운송업 기업체 재직(고용보험에 가입) 근로자 ② 거주지(주민등록등본상), 차고지, 사업장 소재지(사업자등록증상) 중 어느 하나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해당하는 위·수탁차주 또는 개인사업자(자차주)

□ 지원 제외 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)
- 사업주(사업주의 배우자 포함)와 4촌 이내 혈족·인척 관계가 있는 자
- 인력 공급업(7512), 경비 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
- 「2026년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에 참여하여 1회차 이상 수령한 자
-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

Ⅲ 추진절차

□ 지원절차

단 계	세부 내용	추진주체
사업공고	■ 참여자 모집을 위한 사업 공고(홈페이지)	울산양산 경영자총협회
사업 참여 및 안심페이 신청	■ 안심페이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	사업참여 대상자
대상자 자격심사 및 선발통보	■ 신청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통보	울산양산 경영자총협회
안심페이 지급	■ 선정 대상자에 울산페이 개별 지급 (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→울산광역시→선정대상자)	울산양산 경영자총협회, 울산광역시
사후관리 및 지도	■ 참여자의 부정행위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수시 지도·점검 실시	울산양산 경영자총협회

□ 지급 방법 및 선정기준

- 지원금(울산페이) 지급을 위하여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전 울산페이 어플 다운로드 및 가입 필수

* 신청인/휴대전화번호/울산페이 명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.

- 울산광역시 남구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
 · 근로자는 근무하는 기업의 소재지 기준으로 함
 · 위·수탁차주 및 개인사업자(자차주)는 거주지, 차고지,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

-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
선정 관련 우선순위

구분	1순위	2순위
동일 지역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	한부모가정 혹은 차상위계층	부양가족 수

* 1순위 > 2순위 순
* 동일순위일 경우 접수 순으로 선정함

Ⅳ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며, 선정 결과는 익월 중순 통보 예정
 · 3차 신청기간 : 2026.11.1.(일) ~ 2026.11.30.(월)
 · 3차 선발기간 :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 중순 선발 예정
- 신청방법 :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 제출
 · E-mail : uyea123@hanmail.net
 · 팩스 : 052-277-9986
- 문 의 처 :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사무국 070-5143-5487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□ 제출 서류

① 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 신청서 [서식 1]
② 신청자 확인서(참여 신청 시) [서식 1-1]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[서식 1-2]
④ 주민등록등본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)
⑤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관련 안내 [별첨 1]
⑥ 울산 남구 지역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택 1)

- 주민등록등본, 개인 사업자등록증, 차고지증명 중 해당 서류
-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④의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

⑦ 울산 소재 석유화학업 연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택 1)
- 거래명세서, 계근증, 인수증, 세금계산서, 운송장 등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⑧ 종사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

구분	증빙서류
화물·운송업 소속 근로자	-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
위·수탁차주	-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- 위·수탁계약서
개인화물 (개별화물, 자차주)	-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- 사업자등록증 (단,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와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)

⑨ 우대사항 증빙서류(한부모가족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 시 제출)

※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- 지원금은 요건 충족 시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됨
- 허위 및 부정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지원 제한될 수 있음

■ [서식 1]

『화물 · 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』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
신청자 인적사항	성 명		휴대전화번호	
	주민등록번호		이 메 일	
	주민등록상 주 소			
	우 대 사 항	☐ 해당사항 없음 ☐ 한부모가족 ☐ 차상위계층 ※ 우대 사항 체크시 '한부모가족 증명서' 혹은 ' 차상위계층 확인서' 제출		
	부 양 가 족	☐ 본인 ☐ 본인+부양가족 1인 ☐ 본인+부양가족 2인 이상 ※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인정		
증빙 사업장 정보	유 형	☐ 화물 · 운송업 종사 근로자 ☐ 위 · 수탁차주 ☐ 개인사업자(자차주)		
	사 업 장 명		대 표 자	
	사 업 자 등 록 번 호			
	사 업 장 주 소			
	담 당 자		연 락 처	

석유화학업(전후방포함) 연관 화물·운송업 여부	※ 울산광역시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일(2026.1.12.) 이후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(전후방포함)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습니까? ☐ 예 ☐ 아니오

지급정보 (울산페이)	가 입 유 무	☐ 가입 / ☐ 미가입	미 가 입 사 유	
	울 산 페 이 모바일 카드번호	[모바일 카드번호 16자리] - - - (울산페이 앱 접속 → 메인 화면 상단의 '내 카드' 아이콘 선택 → 해당 카드 이미지 아래의 '카드 정보 보기' 클릭 → 우측 상단 '카드 번호 보기' 클릭)		
	가 입 자 동 일 여 부	☐ 예 ☐ 아니오	휴대전화번호 동 일 여 부	☐ 예 ☐ 아니오

* 신청 시 지원 기간동안 아래의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	
지원기간 중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이거나,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 있음	☐ 예 ☐ 아니오
사업 예산이 조기 집행될 경우 안심페이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안심페이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 받음	☐ 확인

「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 참여를 신청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인)

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 (각 1부)	1. 신청자 확인서(참여 신청 시)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 3.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 4.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 관련 안내 5. 석유화학업 연관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택1, 공고문 참고) 6. 종사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택1, 공고문 참고) 7. 우대사항 증빙서류(한부모가족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시 제출)

■ [서식 1-1]

신청자 확인서(참여 신청 시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「화물 · 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」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

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(사업 약정일 기준)	
①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(전후방 포함) 연관 화물·운송업 종사하지 않은 자	[] 예 [] 아니오
② 지정일 이후 석유화학업(전후방포함)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증빙할 수 없는 자	[] 예 [] 아니오
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* 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(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	[] 예 [] 아니오
④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, 사업주 배우자포함)와 4촌 이내의 혈족 · 인척 관계에 해당한 자 **※ 본 항목은 화물 · 운송업체 소속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에 한하여 적용함**	[] 예 [] 아니오
⑤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등(물량팀 포함)에서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자	[] 예 [] 아니오
⑥ 2026년 지역 · 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1회차 이상 지원 받은 자	[] 예 [] 아니오
⑦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경우	[] 예 [] 아니오
⑧ 기타 이 지침(공고)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	[] 예 [] 아니오

기타	
화물 · 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	[] 확인

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·추가징수·지급제한·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[] 예 [] 아니오

2026년 월 일

확인자
(신청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

■ [서식 1-2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(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)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부터 제15조의5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**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** 『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(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)』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·반복 참여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○ **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**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사업자등록번호, (휴대)전화번호, 울산페이 가입정보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
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(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)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**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**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
○ **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** 『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(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)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·반복 참여 확인,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○ **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**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	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(휴대)전화번호, 참여기간, 사업자등록번호 등	수행기관	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	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
3.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~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『울산형 석유화학업 버팀이음프로젝트(화물·운송업 종사자 안심페이 지원)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(이름)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
(주민등록번호)					
(연락처)					

2026년 월 일

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장 귀하

■ [별첨 1]

버팀이음프로젝트 관련 안내

◈ **부정수급이란*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버팀이음프로젝트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**부정수급 자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**를 받음

◈ **버팀이음프로젝트**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**장려금· 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**하며, **중복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환 하여야 함.**

□ **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**

① **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)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**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>

② **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**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>

③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벌칙)>, **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** <동법 제43조(양벌규정)>

《 버팀이음프로젝트의 부정수급 사례 》

1.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

① 피보험자 자격·취득·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

예) 입사일·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 신고

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(위장 취업)하여 지원금 신청

2.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·제출

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

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

3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예)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

위와 같이 버팀이음프로젝트의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명: (인)

수행기관 :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(팩스 052-277-9986 / 메일 uyea123@hanmail.net)